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수 확대〉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86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호선의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2. 24.
3. 회 부 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회사와 9개 자회사에서 ‘19년부터 5년간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4).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의 수를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 ----- ----- ----- -----5명-----.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

검·조사하여 위반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농업중앙회는 ‘내부통제규정’, ‘준법감시업무규정’ 등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체제구축, 임직원 교육, 위법부당 행위 조사·보고, 내부통제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준법감시업무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준법감시부서(준법지원부)를 두고, 준법감시부서에는 준법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인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농협 준법감시부서에는 준법감시인 1인을 포함한 25명의 직원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 중임.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주요 직무]

구 분	내용
준법감시체제구축	• 내부통제 총괄 • 준법감시매뉴얼 제정·관리 • 내부통제법규준수프로그램 입안 • 임직원 교육 • 준법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기록 유지
모니터링 조사	• 내부통제기준 점검위반사항 조사 등 처리 •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요구, 감사위원회 보고 • 문제점, 미비사항 개선, 시정 조치 등 처리 • 내부통제 강화대상 직원 감찰
일상업무 사전심의	• 정관, 규정 등 제정 및 개폐, 이사회 등 부의안건 • 신상품, 새로운 업무, 신제도 도입 • 주요 대외 계약서, 중요소송 및 중재사항 • 경영공시, 감독기관 제출자료, 문서 • 상호금융상품 광고
내부통제 지원·자문	•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 경영진, 해당부서 자문 • 내부통제법규 준수, 민원처리 관련 협조
본회 이용자 보호	• 법률구조 • 공정거래

자료: 농협중앙회

그러나 이와 같은 내부통제 체계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의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이 800억원에 달하며, 그 유형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430억 2,829만원), 업무상 배임(213억 4,254만원), 횡령(157억 583만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9,235만원) 등으로 나타나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협은행 최근 5년간(2020~2025.8.) 금융사고 적발 현황]

연도	건수	금융사고액
2020	6건	1억 5,316만원
2021	4건	56억 5,666만원
2022	1건	-
2023	6건	3억 9,404만원
2024	19건	453억 7,512만원
2025.8.	8건	275억 4,204만원
합 계	44건	802억 2,102만원

또한,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9개의 자회사를 포괄하는 대규모 조직으로서¹⁾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인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 규모 및 업무 특성에 상응하여 준법감시 인력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중앙회의 준법감시인 수를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앙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26.1.7.)한 농협 특별감사(‘25.11.24.~12.19.) 중간 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온정적·형식적 징계

1) 참고자료: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를 비롯하여, 중앙회장의 출장비 초과 집행,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어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흡성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준법감시인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준법감시인 증원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중앙회 준법감시인 확대가 실질적으로 금융지주 내부통제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협금융지주 및 각 자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²⁾에 따라 각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준법감시인³⁾을 두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책무구조도, 내부통제위원회 등⁴⁾ 별도의 내부통제 장치도 구축·운영하고 있음.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준법감시인 제도는 1997년 금융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체계, 특히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기관에 먼저 도입되었고, 이후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일정 자산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됨(김남영,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1.4.22.).

4)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농협금융지주 및 자회사 준법감시인력 현황]

법인	부서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집행 간부 (임원/ 본부장)	M급 (부장)	3급 (부부 장등)	4급 (차장/ 과장)	5급 이하 (대리/ 사원)	계	전문직	일반 계직	계
금융 지주	준법지원부	12		1	2	7		10	2		2
은행	준법감시부	104	1	3	10	41	18	73	18	13	31
	자금세탁방지부	82		1	5	17	7	30	1	51	52
생명	준법감시팀	13		1	2	6	3	12	1		1
손해	준법감시팀	9		1	1	5	1	8		1	1
투자 증권	준법기획팀	7			1	1		2	5		5
	컴플라이언스부	23			9	11	1	21	1	1	2
	법무지원부	14						0	13	1	14
자산 운용	준법감시팀	5	1		1	1	2	5			0
	법무팀	3						0	2	1	3
캐피탈	준법기획팀	6		1		3	2	6			0
	준법감시팀	3				2	1	3			0
저축	준법지원실	6	1		1	4		6			0
리츠	컴플라이언스부	2	1		1			2			0
벤처	준법감시인	2		1				1	1		1
합계		291	4	9	33	98	35	179	44	68	112

자료: 농협중앙회

이러한 구조에서 중앙회 차원의 준법감시인 확대는 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기존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농협중앙회는 경제 및 금융사업 분리 이후 조합 및 농업인 교육·지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 상호금융 등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현행법상 중앙회 준법감시인이 점검하는 내부통제기준은 ‘중앙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 절차와 기준’이므로,⁵⁾ 개정안에 따라 증원된 준법감시인의 업무 범위에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일각에서는 중앙회 인사의 금융업무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⁶⁾ 지주회사별 책임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한 취지를 고려하여 중앙회의 금융지주 경영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⁷⁾

따라서 금융지주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준법감시인 증원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중앙회의 준법감시 체제가 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

5)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4.24.),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7)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참 고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